5. 법률 문제

- 1. 검사는 증거사본에서 시나리오 외부유출과 관련된 이메일의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였다. 이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기술하시오.
- 전문증거란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닌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를 말한다.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아 원칙적으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.
- 디지털 증거에서 컴퓨터가 생성하는 파일(로그파일 등)은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, 그 이외의 파일(한글파일, 이메일 등)의 경우 전문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아 원칙적으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.
 - 하지만 예외적으로.
 - 1. 법관이 작성한 조서
 - 2.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조서
 - 3. 성립의 진정성이 부여된 제3자의 진술
 -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, 감정의 경우 성립의 진정성이 부여됨
 - 4. 진술자가 사망, 해외거주, 질병의 이유로 진술하지 못할 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경우
 - 5. 통상문서 : 상업장부, 항해일지 등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작성된 문서
 - 6. 진술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경우 그 신뢰성이 보장되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.
- 2. 만약 이메일 정보가 PC에 저장되지 않아서 메일 서버에 로그인 하여 증거를 수집한다고 하였을 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적법한 방법은 무엇인가.
- 원격지 압수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의하려면
 - 1.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적법한 과정에서 계정명,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를 입수
 - 2.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(예. 한국인터넷진흥원) 내 PC를 이용하여 접속
 - 3. 피압수자 또는 피고인이 접속하는 통상적인 방법(ID, 비밀번호로 로그인)으로 접속
 - 4.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해당 증거만을 선별수집
 - 3. 이와 같은 경우에도 참여권을 보장하고, 압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.